하남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 2509 제안연월일 : 2022. 10. 6.

제 안 자: 박선미 의원

1. 수정이유

○ 조례안 내용 중 '공터'는 상위법인 「주차장법」에 규정되지 않은 개념이며 본 조례에서 준용하는 「하남시 주차장 조례」에도 관련 조항이 없어 향후 밤샘주차 시설 및 장소의 관리와 운영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사항이므로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'공터' 의 용어 정의 삭제(안 제2조)
- 밤샘주차 시설 및 장소의 지정 대상 중 공터 삭제(안 제4조)
- 3. 수정조례안 : 덧붙임
- 4. 수정안 조문 대비표 : 덧붙임

하남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하남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"밤샘주차" 란 화물자동차를 오전 0시부터 오전 4시까지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하는 것을 말한다.

제4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.

『위의 수정부분 이외의 수정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음』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워 아 개 정 안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"밤샘주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차"란 화물자동차를 오전 0시부터 1. "밤샘주차"란 화물자동차를 오 오전 4시까지 사이에 1시간 이상 전 0시부터 오전 4시까지 사이 주차하는 것을 말한다. 에 1시간 이상 주차하는 것을 말 한다. 2. "공터"라 한 필지 내 도로를 제 외한 건축물이 없는 부분으로서 필지 전체 또는 일부의 지면과 진출입로를 포장 또는 땅 고르 기를 하는 등 화물자동차의 보 관이 가능한 장소를 말한다. 제4조(밤샘주차 시설 및 장소의 지 제4조(밤샘주차 시설 및 장소의 지 정) ①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정) ① ------시행규칙 | 제21조제3호 및 제4호 에 따라 화물자동차를 밤샘주차 할 수 있는 시설 및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 설 및 장소 중에서 하낚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이 지정한다. 이 경우 시설 및 장소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1. ~ 3. (생 략) 1. ~ 3. (현행과 같음)

4. 공터	<u>〈삭 제〉</u>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